

금융투자업규정 일부개정규정

금융투자업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6조제3항제4호 중 “전자단기사채”를 “단기사채(「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나목에 따른 권리로서 같은 법 제59조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고 전자등록된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로 하고, 같은 조 제5항제3호 및 제8항제1호 중 “「전자단기사채등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자단기사채등”을 각각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단기사채등”으로 하며, 같은 조 제8항제5호 중 “예탁결제원”을 “예탁결제원, 전자등록기관(「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자등록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 한다.

제4-21조제1호다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다. 투자자 소유의 전자등록주식등(「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자등록주식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예탁증권을 담보로 하는 금전의 용자(이하 “증권담보용자”라 한다). 이 경우 매도되었거나 환매청구된 전자등록주식등 또는 예탁증권을 포함한다.

제4-24조제3항 중 “예탁증권담보용자”를 “증권담보용자”로 한다.

제4-36조제1항제1호 중 “예탁결제원”을 각각 “예탁결제원 또는 전자등록기관”으로 한다.

제4-66조제4항 중 “예탁결제원”을 각각 “전자등록기관”으로 한다.

제4-87조제1항제6호가목 중 “「전자단기사채등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단기사채”를 “단기사채”로 한다.

제4-102조제1항 중 “예탁증권담보유자”를 “증권담보유자”로 한다.

제4-102조의6제6호 중 “전자단기사채”를 “단기사채”로 한다.

제5-4조제1항 중 “「전자단기사채등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자단기사채등”을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단기사채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국채법」 및 「공사채등록법」”을 각각 “「국채법」”으로, “등록필통지서 또는 등록필증”을 “등록필통지서”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예탁결제원”을 “예탁결제원 또는 전자등록기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제1호 중 “예탁결제원이 작성·비치하는 예탁자계좌부”를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장부”로 하고, 같은 호에 가 목 및 나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가. 예탁대상증권등(「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08조제2항에 따른 예탁대상증권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 : 예탁결제원이 작성·관리하는 예탁자계좌부

나. 전자등록주식등(「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전자등록주식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 : 전자등록기관이 작성·관리하는 전자등록계좌부(「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전자등록계좌부를 말한다. 이하 같다)

제5-21조제2항 중 “보관·관리하고 있는”을 “보관하게 되는”으로 하고, “투자자 예탁분임을 명시하여 지체없이 예탁결제원에 예탁하여야 한다”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로 하며, 같은 항에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예탁대상증권등 : 투자자예탁분임을 명시하여 지체 없이 예탁결제원에 예탁

2. 전자등록주식등 : 고객계좌부(「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 22조제2항에 따라 작성되는 고객계좌부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지체 없이 증가의 전자등록(「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등록을 말한다. 이하 같다)

제5-22조제3항제1호 중 “예탁결제원에 예탁하고”를 “보관·관리하고”로 하고, “예탁결제원”을 “예탁결제원 또는 전자등록기관”으로 한다.

제5-25조제1항 중 “예탁결제원”을 “전자등록기관”으로 한다.

제5-26조제1항제1호 중 “이 호에서”를 “이 항에서”로 하고, 같은 조 같은 항에 제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의2. 대차거래대상 증권 및 담보증권이 전자등록주식등인 경우에는 전자등록기관의 계좌관리기관등 자기계좌부(「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22조제2항에 따라 작성되는 계좌관리기관등 자기계좌부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투자매매업자등의 고객계좌부상 계좌간 대체(다만, 담보증권의 계좌간 대체의 전자등록은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에 의한 질권 설정의 전자등록으로 갈음할 수 있다)

제5-26조제2항 중 “예탁결제원”을 “전자등록기관”으로 한다.

제6-4조제1항 중 “예탁결제원”을 각각 “전자등록기관”으로 한다.

제6-7조제1항제13호 중 “예탁결제원”을 “전자등록기관”으로 한다.

제6-8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중 “예탁결제원”을 각각 “전자등록기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1호 중 “예탁결제원”을 “전자등록기관”으로 한다.

제6-10조제3항제3호 중 “예탁결제원”을 “전자등록기관”으로 하고, “예탁자계좌”를 “계좌관리기관등 자기계좌”로 한다.

제6-21조제1항 본문 중 “증권 및 증권을 발행하지 아니하고 등록발행된 채권

은 제외한다”를 “증권은 제외한다”로 하고, “에 보관하여야”를 “을 통하여 전자등록하여야”로 하며, 같은 항 단서를 삭제한다.

제6-24조 중 “예탁결제원”을 “전자등록기관”으로 한다.

제7-16조제3항제4호라목 중 “전자단기사채”를 “단기사채”로 한다.

제7-19조제1항제3호 중 “전자단기사채”를 “단기사채”로 한다.

제7-29조제2항 중 “예탁결제원이 작성·비치하는 예탁자계좌부상 계좌간 대체의”를 “전자등록계좌부상 계좌간 대체의 전자등록”으로 한다.

제7-34조제2항 중 “예탁결제원”을 “전자등록기관”으로 한다.

제7-41조제3항 중 “예탁결제원”을 각각 “전자등록기관”으로 한다.

제8-2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를 “법 제286조제1항제5호에 따른 협회를 통한 장외매매거래가 불가능한 경우를 말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1호부터 제3호를 각각 삭제한다.

제8-19조의14제1항제1호 중 “「전자단기사채등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자단기사채”를 “단기사채”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의 개정규정은 2019년 9월 1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등록채권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 당시 종전의 「공사채 등록법」에 따른 등록채권의 결제는 제5-4조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등록필증의 교부로 갈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종전의 「공사채 등록법」이 정하는 등록변경에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신·구조문대비표

| 현 행 | 개 정 안 |
|---|---|
| <p>제4-6조(금융투자업자의 정보교류의 차단) ①·② (생략)</p> <p>③ 영 제50조제1항제2호가목2)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증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권을 말한다.</p> <p>1. ~ 3. (생략)</p> <p>4. 영 제183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기준을 충족하는 기업어음 증권 또는 <u>전자단기사채</u></p> <p>④ (생략)</p> <p>⑤ 영 제50조제1항제2호다목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증권”이란 다음 각 호의 증권을 말한다.</p> <p>1.·2. (생략)</p> <p>3. 「<u>전자단기사채등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u>」에 따른 <u>전자단기사채등</u></p> <p>4.·5. (생략)</p> <p>⑥·⑦ (생략)</p> <p>⑧ 영 제50조제2항제1호에서 “금</p> | <p>제4-6조(금융투자업자의 정보교류의 차단) ①·② (현행과 같음)</p> <p>③ -----</p> <p>-----</p> <p>-----</p> <p>-----</p> <p>1. ~ 3. (현행과 같음)</p> <p>4. -----</p> <p>-----</p> <p>----- <u>단기사채(「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나목에 따른 권리로서 같은 법 제59조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고 전자등록된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u></p> <p>④ (현행과 같음)</p> <p>⑤ -----</p> <p>-----</p> <p>-----</p> <p>-----</p> <p>1.·2. (현행과 같음)</p> <p>3. 「<u>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u>」에 따른 단기사채 등</p> <p>4.·5. (현행과 같음)</p> <p>⑥·⑦ (현행과 같음)</p> <p>⑧ -----</p> |

| 현행 | 개정안 |
|---|--|
| <p>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금융투자상품”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투자상품을 말한다.</p> <p>1. 국채증권, 지방채증권, 특수채증권, 「전자단기사채등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자단기사채등</p> <p>2. ~ 4. (생략)</p> <p>5. 거래소, <u>예탁결제원</u> 또는 증권금융회사가 발행한 주권으로서 증권시장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권</p> <p>6.·7. (생략)</p> <p>⑨·⑩ (생략)</p> <p>제4-21조(용어의 정의) 이 절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p> <p>1. “신용공여”란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가 증권에 관련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투자자에게 금전을 대출하거나 증권을 대여하는 것을 말한다.</p> <p>가. 모집·매출, 주권상장법인의 신주발행에 따른 주식을 청약하여 취득하는데 필요한</p> | <p>----- ----- ----- -----.</p> <p>1. ----- -----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단기사채등</p> <p>2. ~ 4. (현행과 같음)</p> <p>5. ----- <u>예탁결제원, 전자등록기관(「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자등록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u> ----- -----</p> <p>6.·7. (현행과 같음)</p> <p>⑨·⑩ (현행과 같음)</p> <p>제4-21조(용어의 정의) ----- ----- -----.</p> <p>1. ----- ----- ----- ----- -----.</p> <p>가. ----- ----- -----</p> |

| 현 행 | 개 정 안 |
|---|---|
| <p>자금의 대출(이하 “청약자 금대출”이라 한다)</p> <p>나. 증권시장에서의 매매거래 (다자간매매체결회사에서의 매매거래를 포함한다)를 위 하여 투자자(개인에 한하 다)에게 제공하는 매수대금 의 용자(이하 “신용거래용 자”라 한다) 또는 매도증권 의 대여(이하 “신용거래대 주”라 한다)</p> <p>다. <u>투자자의 예탁증권(매도되 었거나 환매청구된 증권을 포함한다)을 담보로 하는 금 전의 용자(이하 “예탁증권담 보용자”라 한다)</u></p> <p>2. ~ 5. (생략)</p> <p>제4-24조(담보의 징구) ①·② (생 략)</p> <p>③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 업자가 <u>예탁증권담보용자</u>를 함 에 있어서는 가치산정이 곤란하 거나 담보권의 행사를 통한 대 출금의 회수가 곤란한 증권을</p> | <p>----- -----</p> <p>나. ----- ----- ----- ----- ----- ----- -----</p> <p>다. <u>투자자 소유의 전자등록주 식등(「주식·사채 등의 전자 등록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자등록주식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예탁증권을 담보로 하는 금전의 용자(이 하 “증권담보용자”라 한다). 이 경우 매도되었거나 환매 청구된 전자등록주식등 또 는 예탁증권을 포함한다.</u></p> <p>2. ~ 5. (현행과 같음)</p> <p>제4-24조(담보의 징구) ①·② (현 행과 같음)</p> <p>③ ----- -----<u>증권담보용자</u>----- ----- ----- -----</p> |

| 현행 | 개정안 |
|---|---|
| <p>담보로 징구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경우 협회는 그 구체적인 기준을 정할 수 있다.</p> | <p>----- ----- -----.</p> |
| <p>제4-36조(매매거래 등의 통지) ① 영 제70조제1항제2호라목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을 말한다. 다만, 투자자가 영 제70조제1항제2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방법으로 매매성립내용을 통지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1. <u>예탁결제원</u>의 <u>기관결제참가자</u>인 투자자 또는 투자일임업자(<u>예탁결제원</u>을 통하여 투자자의 매매거래내역 등을 관리하는 자에 한한다)에 대하여 <u>예탁결제원</u>의 <u>전산망</u>을 통하여 매매확인서 등을 교부하는 방법</p> <p>2.3. (생략)</p> <p>②·③ (생략)</p> | <p>제4-36조(매매거래 등의 통지) ① ----- ----- ----- ----- ----- ----- ----- ----- -----.</p> <p>1. <u>예탁결제원 또는 전자등록기관</u>----- --(<u>예탁결제원 또는 전자등록기관</u>-----) <u>예탁결제원 또는 전자등록기관</u>----- -----</p> <p>2.3. (현행과 같음)</p> <p>②·③ (현행과 같음)</p> |
| <p>제4-66조(자산운용보고서) ①~③ (생략)</p> <p>④ 집합투자업자가 영 제92조제4항에 따라 <u>예탁결제원</u>을 통하여 자산운용보고서를 교부하려는 경</p> | <p>제4-66조(자산운용보고서) ①~③ (생략)</p> <p>④ ----- ----- <u>전자등록기관</u>----- -----</p> |

| 현행 | 개정안 |
|--|--|
| <p>적격 등급, 투자적격 등급 중 최하위 등급 또는 차하위 등급을 받은 회사채(전자단기사채는 제외한다)</p> <p>7. (생략)</p> | <p>----- ----- -----(<u>단기사채</u>-----) -----)</p> <p>7. (현행과 같음)</p> |
| <p>제5-4조(결제방법) ① 채권의 장외거래에 따른 결제는 매도자와 매수자가 협의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한 날의 다음날부터 30영업일 이내에 행한다. 다만, 조건부 매매, 소매채권매매,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의 채권매매 및 전자단기사채등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자단기사채등의 경우에는 매매계약을 체결한 날에 결제를 행할 수 있다.</p> <p>② 「국채법」 및 「공사채등록법」에 따른 등록채권의 결제는 등록필통지서 또는 등록필증의 교부로 이에 갈음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국채법」 및 「공사채등록법」이 정하는 등록변경에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p> <p>③ 투자매매업자등과 영 제7조제4항제3호 각 목의 기관간 채권의 장외거래의 결제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채권과 대금을 동시에 결제하여야 한다. 다만, 예탁결제원이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p> | <p>제5-4조(결제방법) ① ----- ----- ----- ----- ----- ----- 「<u>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u>」에 따른 단기사채등----- -----.</p> <p>② 「<u>국채법</u>」----- ----- <u>등록필통지서</u>----- ----- 「<u>국채법</u>」----- -----.</p> <p>③ ----- ----- ----- ----- ----- <u>예탁결제원 또는 전자등록기관</u>-----</p> |

| 현행 | 개정안 |
|---|---|
| <p>그러하지 아니하다.</p> <p>1. 채권은 <u>예탁결제원이 작성·비치하는 예탁자계좌부</u>에서의 계좌간 대체</p> <p style="text-align: center;"><u><신설></u></p> <p style="text-align: center;"><u><신설></u></p> <p>2. (생략)</p> <p>제5-21조(매도 증권의 보관·관리 등) ① (생략)</p> <p>② 투자매매업자등은 제1항에 따라 <u>보관·관리하고 있는 조건부매도 증권 전부에 대하여 투자자예탁분임을 명시하여 지체 없이 예탁결제원에 예탁하여야 한다.</u></p> <p style="text-align: center;"><u><신설></u></p> | <p>-----.</p> <p>1. -----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장부-----</p> <p style="text-align: center;">-----</p> <p>가. <u>예탁대상증권등(「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08조제2항에 따른 예탁대상증권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 : 예탁결제원이 작성·관리하는 예탁자계좌부</u></p> <p>나. <u>전자등록주식등(「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전자등록주식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 : 전자등록기관이 작성·관리하는 전자등록계좌부(「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전자등록계좌부를 말한다. 이하 같다)</u></p> <p>2. (현행과 같음)</p> <p>제5-21조(매도 증권의 보관·관리 등) ① (현행과 같음)</p> <p>② -----</p> <p>---- <u>보관하게 되는</u> -----</p> <p>-----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p> <p>1. <u>예탁대상증권등 : 투자자예탁</u></p> |

| 현 행 | 개 정 안 |
|---|---|
| <p><u>호에서 같다</u>)이 <u>예탁결제원이</u> <u>예탁대상증권으로</u> <u>지정한 증</u> <u>권인 경우에는</u> <u>예탁결제원의</u> <u>예탁자계좌부</u> 또는 <u>투자매매</u> <u>업자등의 투자자계좌부상</u> <u>계</u> <u>좌간 대체(다만, 담보증권의</u> <u>계좌간 대체는 법 제311조제2</u> <u>항에 의한 질권설정으로</u> <u>같음</u> <u>할 수 있다)</u></p> <p style="text-align: center;"><u><신 설></u></p> <p>2.3. (생략)</p> <p>② <u>예탁결제원은</u> <u>제1항의 시행에</u> <u>필요한 세부사항을</u> <u>정할 수</u> <u>있</u> <u>다.</u></p> <p>제6-4조(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관 련 취득한도의 관리 등) ① 투자</p> | <p><u>항에서</u> ----)----- ----- ----- ----- ----- ----- ----- ----- ----- ----- -----)</p> <p><u>1의2. 대차거래대상 증권 및 담</u> <u>보증권이 전자등록주식등인 경</u> <u>우에는 전자등록기관의</u> <u>계좌관</u> <u>리기관등 자기계좌부(「주식·사</u> <u>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u> <u>률」 제22조제2항에 따라 작성</u> <u>되는 계좌관리기관등 자기계좌</u> <u>부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u> <u>투자매매업자등의</u> <u>고객계좌부</u> <u>상 계좌간 대체(다만, 담보증권</u> <u>의 계좌간 대체의 전자등록은</u> <u>「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u> <u>관한 법률」 제31조제1항에 의</u> <u>한 질권 설정의 전자등록으로</u> <u>같음할 수 있다)</u></p> <p>2.3. (현행과 같음)</p> <p>② <u>전자등록기관</u>----- ----- -.</p> <p>제6-4조(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관 련 취득한도의 관리 등) ① ---</p> |

| 현행 | 개정안 |
|---|---|
| <p>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는 영 제18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라 외국인이 주식 바스켓 납입을 통한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의 설정을 신청하거나 환매를 청구하는 경우에 그 세부내역을 지체 없이 <u>예탁결제원</u>에 송부하여야 하고, <u>예탁결제원</u>은 이를 취합하여 외국인투자관리시스템을 통하여 금융감독원장에게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p> <p>② ~ ⑤ (생략)</p> | <p>----- ----- ----- ----- ----- ----- ----- 전자등록 기관----- 전자등 록기관----- ----- ----- ----- -----.</p> <p>② ~ ⑤ (현행과 같음)</p> |
| <p>제6-7조(증권 매매거래의 제한 등) ① 영 제188조제2항제1호가목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하며, 같은 항 제3호에 따라 상장증권을 매매 외의 방식으로 거래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증권시장 및 다자간매매체결회사 외에서 거래할 수 있다.</p> <p>1. ~ 12. (생략)</p> <p>13. <u>예탁결제원</u>, 증권금융회사 또는 투자중개업자의 중개에 따른 대차거래. 다만, 영 제187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취득</p> | <p>제6-7조(증권 매매거래의 제한 등) ① ----- ----- ----- ----- ----- ----- ----- ----- ----- ----- ----- -----.</p> <p>1. ~ 12. (현행과 같음)</p> <p>13. <u>전자등록기관</u>, ----- ----- ----- -----</p> |

| 현행 | 개정안 |
|--|---|
| <p>지체 없이 신고하도록 하여야 한다.</p> <p>3. 제6-7조제1항제1호, 제2호(제6-2조제1항제5호 및 제6호는 제외한다), 제7호, 제8호, 제16호 및 제19호의 경우에는 당해 외국인이 금융감독원장이 정하는 서식에 따라 금융감독원장에게 즉시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주식예탁증권, 유통주식예탁증권의 권리행사로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u>예탁결제원</u>으로 하여금 외국인 투자관리시스템을 통하여 금융감독원장에게 즉시 신고하도록 하여야 한다.</p> <p>4. (생략)</p> <p>② 외국인이 상장법인의 주식을 발행시장에서 취득하거나 상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방법과 절차에 따라 금융감독원장에게 그 내역을 신고하여야 한다.</p> <p>1. 외국인이 유·무상증자, 주식배당, 합병사의 합병·분할·분할합병, 감자, 주식의 병합 등에 따라 주식을 취득하거나 상실하는 경우에는 <u>예탁결제원</u>으로 하여금 외국인투자관리시스템</p> | <p>----- -----.</p> <p>3. ----- ----- ----- ----- ----- ----- ----- ----- ----- ----- <u>전자</u> <u>등록기관</u>----- ----- -----.</p> <p>4. (현행과 같음)</p> <p>② ----- ----- ----- ----- ----- -----.</p> <p>1. ----- ----- ----- ----- <u>전자등록기관</u>----- -----</p> |

| 현행 | 개정안 |
|---|--|
| <p>을 통하여 그 취득내역을 금융감독원장에게 지체 없이 신고하도록 하여야 한다.</p> <p>2. ~ 3. (생략)</p> | <p>----- ----- -----.</p> <p>2. ~ 3. (현행과 같음)</p> |
| <p>제6-10조(투자등록신청 등) ①·② (생략)</p> <p>③ 제1항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투자등록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p> <p>1.2. (생략)</p> <p>3. <u>예탁결제원에</u> <u>예탁자계좌</u>를 개설한 국제예탁결제기구 명의로 투자등록을 하고 동계좌를 이용하여 국채증권 및 통화안정증권을 취득 또는 처분하고자 하는 경우. 다만, 해당 국제예탁결제기구에서 동기구의 명의로 투자등록을 한 외국인의 채권거래내역을 금융감독원장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보고하지 않는 경우를 제외한다.</p> | <p>제6-10조(투자등록신청 등) ①·② (현행과 같음)</p> <p>③ ----- ----- -----.</p> <p>1.2. (현행과 같음)</p> <p>3. <u>전자등록기관에</u> <u>계좌관리기관등 자기계좌</u>----- ----- ----- ----- ----- ----- ----- -----.</p> |
| <p>④·⑤ (생략)</p> <p>제6-21조(증권의 보관등) ① 외국인은 취득한 증권(제6-7조제1항제8호 및 제9호에 따라 취득 또</p> | <p>④·⑤ (현행과 같음)</p> <p>제6-21조(증권의 보관등) ① ----- ----- -----</p> |

| 현행 | 개정안 |
|--|--|
| <p>이내인 <u>전자단기사채</u> : (생략)</p> <p>② ~ ④ (생략)</p> <p>제7-29조(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의 설정 또는 설립) ① (생략)</p> <p>② 영 제248조제3항에 따라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의 설정 또는 설립을 위하여 법 제246조제3항 본문에 따른 자산을 투자자 또는 투자매매업자·투자중개업자가 지정참가회사에 납입하거나 지정참가회사가 집합투자업자에 납입하는 경우에는 <u>예탁결제원이 작성·비치하는 예탁자계좌부상 계좌간 대체의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u></p> <p>③ ~ ⑤ (생략)</p> <p>제7-34조(일부환매의 방법 및 절차) ① (생략)</p> <p>② 투자신탁이나 투자익명조합의 집합투자업자 또는 투자회사등은 제1항에 따라 투자자에게 통지하는 경우 서면 또는 컴퓨터통신으로 하여야 하며, 투자신탁의 집합투자업자는 통지업무를 <u>예탁결제원에 위탁할 수 있다.</u></p> <p>③ (생략)</p> | <p>----- <u>단기사채</u> : (현행과 같음)</p> <p>② ~ ④ (현행과 같음)</p> <p>제7-29조(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의 설정 또는 설립) ① (현행과 같음)</p> <p>② ----- ----- ----- ----- ----- ----- ----- ----- ----- <u>전자등록계좌부상 계좌간 대체의 전자등록</u> ----- -----.</p> <p>③ ~ ⑤ (현행과 같음)</p> <p>제7-34조(일부환매의 방법 및 절차) ① (현행과 같음)</p> <p>② ----- ----- ----- ----- ----- ----- ----- <u>전자등록기관</u>-----.</p> <p>③ (현행과 같음)</p> |

| 현행 | 개정안 |
|--|---|
| <p>채(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의 신용평가를 위하여 금융감독원장에게 본인을 대신하여 평가를 수행할 신용평가회사를 선정해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p> <p>1. 「<u>전자단기사채등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u>」에 따른 <u>전자단기사채</u></p> <p>2.3. (생략)</p> <p>② (생략)</p> <p style="text-align: center;"><u><신설></u></p> <p style="text-align: center;"><u><신설></u></p> <p style="text-align: center;"><u><신설></u></p> | <p>채(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의 신용평가를 위하여 금융감독원장에게 본인을 대신하여 평가를 수행할 신용평가회사를 선정해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p> <p>1. <u>단기사채</u></p> <p>2.3. (현행과 같음)</p> <p>② (현행과 같음)</p> <p style="text-align: center;">부칙</p> <p><u>제1조(시행일) 이 규정의 개정규정은 2019년 9월 16일부터 시행한다.</u></p> <p><u>제2조(등록채권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 당시 종전의 「공사채 등록법」에 따른 등록채권의 결제는 제5-4조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등록필증의 교부로 갈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종전의 「공사채 등록법」이 정하는 등록변경에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u></p> |